

##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의결년월일	98. 9. 22 (제64회)

제출년월일 : 1998. 9. 21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 1. 제안이유

-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자치 12200-1252, 98. 6. 23)이 시달됨에 따라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에 의거 상임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현실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효율적  
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과 일치시키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담당부서를  
직제에 맞게 재조정함.
- 위원회별 명칭변경 및 소관사무 조정(안 제3조제2항)
  - 기획재정위원회 : 감사실, 정책기획실, 공보실, 읍무즈만, 행정지원국(회계과), 지역경제국, 세무국,  
농산지원사업소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국(총무과, 민방위계난관리과, 정보통신과), 복지환경국, 보건소, 녹지공  
원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 건설교통위원회 :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하수정화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설  
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조례 제 호

##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9인 이내
2. 기획재정위원회 11인 이내
3. 행정복지위원회 11인 이내
4. 건설교통위원회 12인 이내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실, 정책기획실, 공보실, 읍부즈만, 행정지원국(회계과), 지역경제국, 세무국, 사업소 중 농산지원 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지원국(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 복지환경국, 사업소 중 보건소,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

4.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국, 사업소 중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하수정화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중 “총무복지, 환경건설위원회” 를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u>총무복지위원회 11명 이내</u></p> <p>4. <u>환경건설위원회 12명 이내</u></p> <p>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u>기획재정위원회</u></p> <p>• <u>기획실, 감사담당관실(읍부즈만), 재정경제국, 사업소 중 농촌지도소,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u></p>	<p>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u>행정복지위원회 11인 이내</u></p> <p>4. <u>건설교통위원회 12인 이내</u></p> <p>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기획재정위원회</u></p> <p>• <u>감사실, 정책기획실, 공보실, 읍부즈만, 행정지원국(회계과), 지역경제국, 세무국, 사업소 중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u></p>

현행	개정안
<p><u>3. 충무복지위원회</u></p> <p>• <u>충무국, 시민복지국, 사업소 중 보건소,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u></p> <p><u>4. 환경건설위원회</u></p> <p>• <u>환경국, 건설교통국, 사업소 중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u></p> <p>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 (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 <u>충무복지, 환경건설위원회</u>의 위원장은 의회운영 위원을 겸할 수 없다.</p> <p>② - ③ (생략)</p>	<p><u>3. 행정복지위원회</u></p> <p>• <u>행정지원국(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 복지환경국, 사업소 중 보건소,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u></p> <p><u>4. 건설교통위원회</u></p> <p>• <u>건설교통국, 사업소 중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하수정화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u></p> <p>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p> <p>①.....                  .....                  .....<u>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